

## 의견서

2019. 3. 5.

수 신 : WIS League  
참 조 : 윤동구 이사님  
발 신 :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경주, 장명철)  
제 목 : Market Coin 백서 등 검토의견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배경사실

귀사가 제공한 Market Coin 의 백서(White Paper) (이하 “본건 백서”)에 의하면 귀사는 아래와 같은 토큰의 발행 및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는 기존 전자금융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 등과의 제휴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P 기반의 지불결제 플랫폼인 MK 플랫폼(이하 ‘본건 플랫폼’)의 개발을 예정하고 있고, 본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 ERC-20 에 기반하며 여러 암호화폐와의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 본건 플랫폼 이용에 기본이 되는 토큰인 MK coin(이하 ‘본건 토큰’), (ii) 본건 플랫폼의 참여자, 제휴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상품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불 결제 환경을 제공하며, 이용자에게 일정한 보상서비스(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판매액의 2% 수준에 상당하는 본건 토큰 제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를 제공하는 MK Pay, (iii) 다양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지급 결제 모듈과 연동하여 NFC, QR 코드 등을 통하여 손쉬운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MK Wallet.

- 또한 귀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통적인 결제 수단, 알리페이 등의 다양한 Pay 결제 수단, 본건 토큰을 포함한 다양한 코인 등을 이용한 결제 수단 등이 모두 이용될 수 있는 통합 POS(Point of Sales)를 도입할 예정이며, 전세계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Market Place’ 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귀사는 총 6,000,000,000 개의 본건 토큰을 발행하되, 이 중 10%를 토큰 당 0.01 USD 로 일반판매(토큰세일)하고, 나머지는 귀사 내부에 유보하거나 마케팅 목적 등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토큰세일 할당 부분에 관하여 백서 26 면에는 10%, 27 면 그래프에는 15%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확인 필요합니다.)

## II. 본건 토큰에 대한 검토의견

### 1. 검토 범위

본 의견서는 귀사가 제공한 본건 백서에 제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초로 합니다. 본 의견서는 (i) 귀사가 발행하는 본건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는지 여부, (ii) 전자적 수단을 통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본건 토큰의 발행·배포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또한 (iii) 귀사가 본건 토큰 교부의 대가를 받는 행위가 특정 다수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을 교부 받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iv) 기타 본건 백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에서 정하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 2. 본건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의미

현재 국내에서 ICO 나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

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그 모집이나 매출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제 118 조)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가 적용될 것이며, 증권의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제 12 조).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말합니다. (i) 투자계약증권과 (ii)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집합투자증권 제외)은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만 증권으로 봅니다(자본시장법 제 4 조,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2).

여기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다만, 원화 표시 양도성 예금증서 등 일정한 유형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됩니다(동항 단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상법」 제 469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 7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3 항).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4 항).

“수익증권”이란 제 110 조의 수익증권, 제 189 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5 항).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6 항).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제외되는 유형 있음)(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7 항).

“증권예탁증권”이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8 항).

## 나. 본건 토큰의 경우

### (1) 채무증권 해당 여부

채무증권은 회사채 등과 같이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귀사의 설명에 따르면, 본건 토큰은 본건 플랫폼의 참여자, 제휴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상품과 서비스 이용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 발행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지급청구권을 내포하거나 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지분증권 해당 여부

귀사의 설명에 따르면, 본건 토큰은 본건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귀사의 지분을 표창하는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건 토큰의 보유자가 귀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귀사의 경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토큰은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수익증권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은 금전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한 투자신탁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본건 토큰은 금전신탁이나 집합투자를 위한 신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종류에 포괄적 개념인 투자계약증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6 항).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른바 ‘Howey Test’가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위 기준의 판단 요소는 투자 목적, 사업의 공동성(commonality), 타인의 노력만에 의한 이익(profits solely from the efforts of others)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의 귀속’ 등을 개념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판례 등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Howey Test’ 등 미국 판례상의 해석 기준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의 판별 기준에 대한 질의에, ① 투자자의 “이익획득 목적”이 있을 것, ② 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 ③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④ 원본까지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⑤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증권일 것을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일련번호 140015,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에 대한 질의”).

본건 토큰은 본건 플랫폼 내에서 여러 이용자가 협력하고 상호작용하게 되어 사업의 공동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에 대한 보상으로써 본건 토큰이 주어지는 결과를 타인의 노력만에 의한 이익 (profits solely from the efforts of others)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건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그 결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본건 토큰의 교환적 가치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귀사의 사업으로부터 수익을 분배 받는다거나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파생결합증권 해당 여부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기초자산이 존재하며, 이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



는 금전이 정해져야 합니다. 본건 토큰은 기초자산의 가치와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보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보유자로부터 금전을 회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증권예탁증권 해당 여부

증권예탁증권은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을 예탁받는 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인데, 본건 토큰은 이와 무관하므로,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7) 소결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귀사가 본건 토큰 보유자에게 귀사에 대하여 본건 토큰을 제시하고 금 또는 금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한, 본건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주의점

위와 같이 본건 토큰은 그 성질에 있어 “증권”이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백서나 본건 토큰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개시하는 인쇄물, 게시물, 커뮤니티, 설명회 등에서 “투자”, “수익”, “수익율”, “ROI”, “투자상품”, “출자금”, “원금”, “원금보장” 등 본건 토큰을 “증권”이나 “투자상품”으로 오인할만한 표현이나 단어들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쇄물, 게시물, 커뮤니티, 설명회 등에서의 표현이나 단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형사상 사기죄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3.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의 해당 여부

### (1)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식 지급수단의 일종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 2 조 제 14 호).

귀사가 제공한 백서의 설명에 따르면, (i) 본건 토큰은 발행인이 아닌 본건 플랫폼 참여자 또는 제휴사, 즉 제 3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ii) 본건 토큰은 기존 결제 수단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본건 토큰이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토큰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건 백서의 설명만으로는 본건 토큰이 결제 또는 정산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이나 비율로 교환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본건 토큰에 저장되어 있는 가치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본건 토큰을 직접 또는 다른 암호화 화폐를 통해 금전, 즉, 법정화폐(FIAT)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교환 가치의 변동성이 커 암호화 화폐 자체에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호화 화폐의 교환 가치는 어떠한 물건이나 서비스에도 내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성질의 금전으로의 교환 가능성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건 토큰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한 지급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귀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및 정산시 적용되는 본건 토큰의 금전 등으로의 교환 비율을 공지하고, 이에 따른 본건 토큰의 금전 등으로의 교환 내지 환불을 예정하고 있다면, 본건 토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본건 토큰에 관하여 일정한 비율의 금전 등으로의 교환을 보장한다면 본건 토큰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귀사가 본건 토큰을 이용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 또는 정산시 적용되는 본건 토큰과 금전 등의 교환에 관한 내용을 사전 공지하지 않거나 공지된 바에 따라 본건 토큰과 금전 등의 교환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5.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큰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건 토큰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제 28 조 제 2 항 제 3 호). 다만,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수가 10 개 이하인 경우, 총 발행잔액이 30 억원 이하인 경우,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귀사는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목적으로 본건 토큰을 발행하므로 가맹점 수가 10 개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본건 토큰의 일반 판매 금액 합계가 20 억원에서 60 억원 사이로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 위 일반판매 이외의 발행 분까지 합하면 총 발행잔액(전년도 1 분기부터 직전 분기말까지의 각 분기별 미상환 발행잔액의 평균값을 말합니다)이 30 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귀사가 본건 토큰을 직접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건 토큰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귀사는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으로 20 억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제 30 조 제 2 항),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여

야 하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하여야 하고,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제 31 조). 본건 토큰 보유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제 19 조).

본건 백서에 의하면, 귀사는 전자금융업체와의 제휴와 협력을 예정하고 있고, 등록된 전자금융업체를 통하여 본건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귀사에 대한 별도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건 백서에는 전자금융업체와의 구체적인 제휴 형태나 방식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귀사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전자화폐 해당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2 개 이상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500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되고,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 개 이상으로서 5 개 업종 수 이상이고,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어야 하며,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전자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 더 범용성이 넓으며, 환급성 및 현금성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본건 토큰은 직접 또는 다른 암호화 화폐를 통해 금전, 즉, 법정화폐(FIAT)로 교환될 수 있으나, 교환 가치의 변동성이 커 암호화 화폐 자체에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화폐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건 백서의 설명만으로는, 본건 토큰 사용처의 범위가 5 개 업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건 토큰이 2 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되는지 여부, 귀사에 의하여 현금 등으로 교환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만일 본건 토큰의 사용처가 토큰이 2 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 개 이상의 가맹점 등으로 확대되지 않거나, 귀사에 의하여 현금 등으로 교환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본건 토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에 해당할 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소 결

위와 같이 본건 토큰은 그 성질에 있어 선불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가 아니므로 인쇄물, 게시물, 커뮤니티, 설명회 등에서 “선불지급수단”, “전자화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는 토큰” 등의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 4. 본건 토큰 교부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지 여부

### 가.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법은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됩니다. 누구든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도 안되며, 이를 위반시 처벌됩니다. 나아가 실제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그 상호 중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됩니다.

#### 나. 본건 토큰의 발행·배포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사는 본건 토큰을 제공하는 대가로 불특정 다수 구매자들로부터 법정화폐를 받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귀사가 구매자들에게 구매 대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거나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본건 토큰의 발행·배포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주의점

본건 토큰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건 토큰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개시하는 인쇄물, 게시물, 커뮤니티, 설명회 등에서 “출자금”, “원금보장”, “출자금 보장”, “금융”, “금융업”, “자금조달”, “투자”, “수익”, “수익율”, “ROI”, “투자상품” 등 유사수신행위로 오인할만한 표현이나 단어들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쇄물, 게시물, 커뮤니티, 설명회 등에서의 표현이나 단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유사수신행위 위반, 형사상 사기죄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5.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②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광고 등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경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매매목적물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사실을 숨긴 경우”(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956 판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 등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일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또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일 때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 나. 본건 백서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귀사가 구매자들에게 본건 토큰을 취득하도록 권유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정보는 백서의 기재뿐 아니라 본건 토큰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개시하는 인쇄물, 게시물, 커뮤니티, 설명회 등에서 제공한 일체의 정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귀사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사가 제공한 본건 백서에는 본건 토큰을 이용한 결제 처리와 정산 방법에 관한 내용, 본건 토큰에 대한 금전적 가치 산정 방법, 교환 또는 환불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들은 본건 토큰 발행 및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본건 토큰 구매자에게 본건 백서를 현 상태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의 누락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 백서에 포

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 주의점

귀사로서는 백서, 인쇄물, 게시물, 커뮤니티, 설명회 등에서 제공한 일체의 정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구매자들이 오인할 만한 내용, 특히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향후 본건 토큰의 사용, 운용 등과 관련한 장래의 계획에 관하여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과장된 내용을 게시하거나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이나 토큰의 구입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게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본건 백서에 본건 토큰을 이용한 결제 및 정산 방법, 금전적 가치 산정방법, 환불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6. 소 결

귀사가 제공한 본건 백서에 제시된 정보를 기초로 할 때 귀사가 발행하는 본건 토큰은 (i)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ii) 전자적 수단을 통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본건 토큰의 발행·배포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iii) 본건 토큰의 교부의 대가로 귀사가 금전을 받는 행위가 특정 다수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을 교부 받는 행위이기는 하나 귀사가 구매자들에게 일정 범위의 금전적 보상을 약정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수신 행위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건 백서에는 본건 토큰을 이용한 결제 처리와 정산 방법에 관한 내용, 본건 토큰에 대한 금전적 가치 산정 방법, 교환 내지 환불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사는 본건 백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III. 결제서비스에 대한 검토의견

#### 1. 검토 범위

본건 백서에 의하면, 귀사는 본건 토큰을 이용한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대금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등의 결제처리가 가능한 MK 전용 POS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서비스 및 POS 도입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 내지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2. 귀사의 결제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 대상인지 여부

#####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의 해당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제 2 조 제 19 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되(제 28 조 제 2 항 제 4 호),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 28 조 제 3 항 제 2 호).

본건 백서의 설명에 의하면, 귀사는 기존의 결제서비스 사업자와의 연계 제휴를 통하여 P2P 기반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를 위한 정산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이러한 정 등의 제공 행위는 사업자 등에게 상품의 구매 등의 대가 정산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정산 등의 대행 또는 매개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여, 귀사는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사는 기존의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통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에 대한 별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의 해당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 2 조 제 8 호의 2). 이러한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20 억 원 이상의 자본금(소규모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10 억 원 이상)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제 27 조의 2).

본건 백서에 의하면, 귀사는 장래에 본건 토큰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이외에 신용카드 등을 결제가 가능한 MK 전용 POS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K 전용 POS 도입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시거나 이러한 등록을 마친 업체와의 업무 제휴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소 결

귀사가 예정하고 있는 결제서비스와 MK 전용 POS 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와 결제서비스에 관한 업무 제휴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IV. 결론

귀사가 제공한 본건 백서에 제시된 정보를 기초로 할 때 본건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수신행위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건 백서에는 본건 토큰을 이용한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사가 예정하고 있는 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본건 플랫폼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

이상과 같이 귀사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견은 귀사에서 제공하신 자료 및 정보의 범위 내에서 검토된 것이므로 자료 또는 정보의 증감·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희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 호 사 박 경 주

변 호 사 장 명 철